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)

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: 2024. 8. .

제 출 자:정부

#### 개정이유

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,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가.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,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,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(안 제125조, 제128조)
- 나.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조

합원의 열람·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4조)

- 다.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/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·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1조)
- 라.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(안 제107조)

#### 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5항제1호 중 "6개월"을 "2개월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⑥ 시장·군수등은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임기 및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 및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4조제3항 중 "6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제107조제3항 중 "사전통지"를 "통지"로 한다.

제1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관련 서류나 자료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. 제1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①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조합임원(청산인을 포함한다)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사임, 해임, 임기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3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조합임원(청산인을 포함한다)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제140조제2항제4호 중 "제125조제2항"을 "제125조제3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~ ④ (생	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	⑤
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시장ㆍ	
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・도조례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・	
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	
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	
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	
게 할 수 있다.	
1. 조합임원이 사임, 해임, 임기	1
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	
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	
는 때부터 <u>6개월</u> 이상 선임되	2개월
지 아니한 경우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
	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
	<u>요청하는 경우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⑥ 시장·군수등은 제5항에 따</u>
	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
	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

⑥ (생략)

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 원의 사임,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・군 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 략)

제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사항의 보고,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한다.

	따른 조합임원의 임기 및 업무
	범위 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
	임기 및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
	<u>할</u> 수 있다.
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	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현
	행과 같음)
	③
	2개월
	 ④・⑤ (현행과 같음)
제	·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	④·⑤ (현행과 같음) 107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④·⑤ (생 략)
- 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 저 ~ ③ (생 략)
  - ④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가 제1 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 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 여 열람 ·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후단 신설>
  - 1. ~ 3. (생략) ⑤ • ⑥ (생 략) <신 설>

제125조(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제125조(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계) ① (생 략)

<신 설>

(10) (10) ED/
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4
이 경우 관련 서류나 자료
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제공
<u>할 수 있다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・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
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
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할 수
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

① · ⑤ (청해과 가으)

계) ① (현행과 같음)

운영할 수 있다.

② 조합임원(청산인을 포함한 다)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사 임, 해임, 임기만료, 그 밖에 불 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 ②·③ (생 략)

제13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138조(벌칙) ① -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8. (생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제140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의2. (생략)
-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
- ③ (생략)

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 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조합임원(청 산인을 포함한다) 또는 전문 조합관리인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4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\_\_\_\_\_
-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| 4. 제125조제3항------
  - ③ (현행과 같음)